

# 2021년도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0. 6.(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원

2. 전차(제2021-25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68건(안건번호 제2021-134697호~13602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34697호~134701호(순번 1번~5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34702호~134705호(순번 6번~9번)는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36025호~136026호(순번 1329번~1330번)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5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25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4쪽의 저작물명, 5쪽의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6쪽의 OSP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D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E,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OSP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86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5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5건임.

(순번 1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3권을 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200원에 대여, 300원에 소장 가능함.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5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9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9건임.  
(순번 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 ■■■의 전체 분량인 약 19분을 우리말 더빙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B, C, D, E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9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0번~132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85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출판,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ONLY'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3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ONLY'를 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10곡 중 1곡임. 2021. 9. 9.에 발매한 국내 최신 음악으로,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영화 '싱크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93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싱크홀'를 185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14분을 mp4 파일, 스트리밍으로 제공함. 2021. 8.

11.에 개봉한 국내 영화이며, 네이버 시리즈 on 및 티빙 등 OTT 서비스에서 10,000원에 대여, 14,900원에 소장 가능함.

(방송 '오징어 게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3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오징어 게임'을 315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의 1화~9화 전체를 각 mkv 파일로 제공함. 넷플릭스에서 2021. 9. 17.에 공개한 드라마이며, 넷플릭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순번 1329번~133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채증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순번 1326번~1328번과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1329번~1330번은 부결하고, 순번 10번~1328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29번~1330번은 부결하고, 순번 10번~132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21-136025호~136026호(순번 1329번~1330번)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134697호~136024호(순번 1번~132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13.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